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1. 개정 시행(예정)일: 2021. 08. 27(금)

2.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안)	비고
<p>제1조 (생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p> <p>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p> <p>2. ~ 4. (생략)</p> <p>5.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운영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업무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합니다.</p> <p>6. ~ 8. (생략)</p> <p>9. "공동인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앱을 말합니다.</p> <p>10.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1조 (좌동)</p> <p>제 2 조 (용어의 정의)</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 "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서명자의 신원</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p> <p>2. ~ 4. (좌동)</p> <p>5.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운영정책 및 절차 등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업무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해당 지침은 BankSign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p> <p>6. ~ 8. (좌동)</p> <p>9. "공동인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은행앱과는 다른 별도 앱을 말합니다.</p> <p>10. ~ 11. (좌동)</p> <p>② (좌동)</p>	<p>전자서명법 개정 사항 반영</p> <p>목 신설</p> <p>홈페이지 게시 방법 명시</p> <p>상세 설명 추가</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제3조 (이용대상) 본 BankSign의 이용대상은 개인으로 합니다.</p> <p>제4조 (BankSign 이용계약) BankSign 이용계약은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성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다른 은행에서 BankSign을 이용중인 고객이 당 은행의 휴대폰 본인확인, 기 설정한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p>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nkSign 이용신청 2. BankSign 이용은행 추가 3. BankSign 인증수단 관리 4. BankSign 이용해지 <p>제6조 (인증서 관리) ①~② (생 략)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갱신절차는 없습니다.</p> <p>제7조 (은행과 가입자의 의무)</p>	<p>제3조 (서비스의 종류) BankSign 의 이용대상은 개인으로 합니다.</p> <p>제 4 조 (Banksign 이용계약) BankSign 이용계약은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성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등) 2. 다른 은행에서 BankSign 을 이용중인 고객이 당 은행에 이용은행 추가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 기 설정한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p>제 5 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삭 제) (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nkSign 인증수단 관리 2. BankSign 이용해지 <p>제 6 조 (인증서 관리) ① ~ ② 좌 등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 년입니다. (삭 제)</p> <p>7 조 (은행과 가입자의 의무)</p>	<p>불필요한 문구 삭제</p> <p>상세 설명 추가</p> <p>이용신청 및 추가 중단 반영 호 삭제 호 체상 호 체상</p> <p>이용신청 및 추가 중단 반영</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① (생략)</p> <p>② 은행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BankSign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업무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인증업무의 양도, 양수, 합병 3. ~ 4. (생략) <p>③ (생략)</p> <p>④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⑤ 가입자는 BankSign 이용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정보 부정 사용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제8조 (BankSign 이용시간)</p> <p>① BankSign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은행이 정한 기간 동안 BankSign 이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BankSign 이용범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변경이 될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p>	<p>① (좌동)</p> <p>② 은행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공동인증앱에 공고하고, 중요사항은 제 19 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서비스의 양도, 양수, 합병 3. ~ 4. (좌동) <p>③ (좌동)</p> <p>④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⑤ 가입자는 BankSign 이용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 3 자가 가입자의 정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등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제 8 조 (BankSign 이용시간)</p> <p>① BankSign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은 BankSign 이용범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개별통지 내용 추가</p> <p>문구 명확화</p> <p>책임범위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p> <p>책임범위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p> <p>일방적인 중단 문구 삭제 및 2항 병합 항 삭제</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③ 제 1 항의 BankSign 이용 일시 중지 또는 제 2 항의 이용범위별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전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p> <p>제 9 조 (BankSign 일시중단)</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p> <p>1. ~ 4. (생략)</p> <p>② 이용매체 및 USIM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해 BankSign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제 10 조 (BankSign 이용제한)</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인증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발급된 인증서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p> <p>1. ~4. (생략)</p> <p>5.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p>	<p>② 이용범위별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 전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p> <p>제9조 (BankSign 일시중단)</p> <p>① 은행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 후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은행이 서비스 이용중단을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 <p>1. ~ 4. (좌 등)</p> <p>② 이용매체 및 USIM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p> <p>제 10 조 (BankSign 이용제한)</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 19 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발급된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p> <p>1. ~4. (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항 체상 및 수정사항 반영</p> <p>일시중단 사유 추가, 사전고지 명시, 예외사항 추가</p> <p>은행 책임범위 명확화</p> <p>최고절차 추가 및 공정위 약관 시정사항 반영</p> <p>호 삭제</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6. 은행이 BankSign 과 관련된 보안절차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p> <p>7. BankSign 이용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p> <p>8.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p>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p> <p>1. (생략)</p> <p>2. 제 9 조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BankSign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p> <p>3. 가입자의 BankSign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4.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p> <p>5. 가입자의 이용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삭제된 경</p> <p>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BankSign 이용 제한, 정지, 폐기를 한 경우에는 제 19 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p> <p>제 11 조 (Banksign 이용해지)</p> <p>① (생략)</p>	<p>(삭제)</p> <p>5. BankSign 이용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p> <p>(삭제)</p> <p>② 은행은 사전 통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후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p> <p>1. (좌 동)</p> <p>(삭제)</p> <p>2. 가입자의 BankSign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3.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p> <p>4. 가입자의 이용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삭제된 경우</p> <p>(삭제)</p> <p>제 11 조 (Banksign 이용해지)</p> <p>① (좌 동)</p>	<p>호 삭제</p> <p>호 체상</p> <p>호 삭제</p> <p>사후 안내 명시</p> <p>호 삭제</p> <p>호 체상</p> <p>항 삭제</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② 은행은 가입자가 BankSign 이용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인증서의 부정 또는 비정상 사용 등으로 BankSign 이용이 정지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p> <p>제 12 조 (사고·장애시의 처리)</p> <p>① 생략</p> <p>② 은행은 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 3 자가 그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③ (생략)</p> <p>제 13 조 (수수료)</p> <p>개인 가입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전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p> <p>제 14 조 (손실부담 및 면책)</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② 은행은 가입자가 BankSign 이용해지를 요청 하더라도 인증서의 부정 또는 비정상 사용 등으로 BankSign 이용이 정지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p> <p>제 12 조 (사고·장애시의 처리)</p> <p>① 좌 동</p> <p>② 은행은 제 1 항의 신고를 받은 이후 제 3 자가 그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③ (좌 동)</p> <p>제 13 조 (수수료)</p> <p>① 가입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p> <p>②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 개월전 제 19 조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수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은행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p> <p>제 14 조 (손해배상 및 면책)</p> <p>①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p>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의미 명확화</p> <p>의미 명확화</p> <p>항 구분 및 의미 명확화 항 구분 및 개별통지 추가 및 의미 명확화</p> <p>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내용 준용 항 추가</p> <p>항 체하</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1. ~ 3. (생략)</p> <p>② 제 1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p> <p>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1. (생략)</p> <p>2. 제 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가입자로부터 이용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은행은 그때로부터 제 3자가 그 이용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1. ~ 3. (좌동)</p> <p>③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p> <p>④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p> <p>1. (좌동)</p> <p>2. 제 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p> <p>3. 은행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4. 가입자가 제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추가 조항 명시 및 항제하</p> <p>변경 조항 반영 및 항제하</p> <p>의미 명확화</p> <p>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손해배상 준용 호 추가</p> <p>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손해배상 준용 호 추가</p> <p>목신설</p> <p>목신설</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BankSign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p> <p>제 16 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은행은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BankSign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BankSign 이용해지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 (생 략)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생 략) <p>② 은행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하는 타은행, 금융 ISAC, 감독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p> <p>제 17 조 (관할법원) (생 략)</p> <p>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p>	<p>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BankSign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은행이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p> <p>제 16 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은행은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의 BankSign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BankSign 이용해지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고유식별정보 : (좌 동) 2. (삭 제)개인정보 : (좌 동) <p>② 은행은 인증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BankSign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타 은행 및 BankSign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공유할 수 있으며, 고객 보호 목적으로 금융 ISAC 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p> <p>제 17 조 (관할법원) (좌 동)</p> <p>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삭 제)</p>	<p>3 항으로 통합 및 항 삭제</p> <p>의미 명확화</p> <p>의미 명확화</p> <p>의미 명확화</p> <p>금융결제원 추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근거 명확화</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p> <p>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 및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 및 통지해야 합니다.</p> <p>④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BankSign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⑤ 은행은 전자적 장치 또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 19 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은행은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12 조 제 3 항, 제 18 조 제 1 항 및 제 2 항처럼 BankSign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① 은행은 전자적 장치 또는 BankSign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p> <p>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p> <p>제 19 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은행은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18 조에 따라 BankSign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p>	<p>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에 따른 중복문구 삭제 및 항 삭제</p> <p>항 체상</p> <p>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준용문구 추가 및 항 추가</p>

은행공동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

개정전	개정(안)	비고
<p>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합니다.</p> <p>제 20 조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BankSign 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생 략)</p> <p>제 21 조 (준거법) (생 략)</p> <p>제 22 조 (약관 외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공동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약관은 2018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신 설)</p>	<p>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p> <p>제 20 조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BankSign 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좌 등)</p> <p>제 21 조 (준거법) (좌 등)</p> <p>제 22 조 (약관 외의 준용) ① 좌동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이 약관은 2018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 이 약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p>	<p>변경 조항 반영 및 개별통지 반영</p> <p>의미 명확화</p> <p>항 구분 관계 법령 관련 효력 명시 및 항 추가</p> <p>부칙 추가</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적용